

I 수입제도 변경사항 / 수출현안

1. 수입식품 포장재 원료 금지품목 신고양식 변경

- 호주 농수산부는 수입식품의 생물성 안전관리와 관련하여, 식품에 사용되는 포장재질의 안전성 검사에 사용되는 포장재질의 신고양식을 변경하였음
- 호주는 수입식품의 원료뿐만 아니라 수입식품의 보관, 운송 등에 사용되는 기자재 들도 생물성 안전관리의 대상으로 엄격한 관리를 실시하고 있음
- 호주 농수산부의 검역지침에 따르면, 생물성 안전관리는 가공 혹은 원재료 식품을 관리하는 상품의 영역과 포장 및 운송과정 등을 관리하는 비상품의 두 가지 영역에서 실시되고 있음
- 금번 결정에 따라 2017년 6월16일 이후 Biosecurity Act 2015 에 규정되어 있는 포장금지재 신고서 (Prohibited packaging material statement)는 새로운 수용불가 포장재 신고서(Unacceptable packaging statement)로 대체되었음
- 동 신고서의 주요 내용은 대나무 혹은 목재가 운송용 포장재에 사용되었는지, 식품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가 안전기준에 맞게 청결한 상태가 유지되었는지 등을 신고하는 것임

* 출처 : 호주 농수산부 <http://www.agriculture.gov.au/import/industry-advice/2017/38-2017>

2. 부패하기 쉬운 식물 제품에 대한 메틸 브롬화물 훈증

- 메틸 브롬화물 훈증은 부패하기 쉬운 식물 제품에서 검출되는 해충 관리에 있어 필수적인 치료 옵션임
- 최근 검사에서 현재의 훈증요법의 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음. 현재 기준 하에서 해충방제를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훈증제 농도로는 훈증제가 전체 위탁 화물에 침투하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임

- 이에 따라 호주 농수산부는 규정된 시간 동안 훈증 목표물 전체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가스 모니터링 튜브의 배치 변경을 결정
- 검사업체는 신선 농산물, 절단 꽃, 식물의 잎 및 묘목에 대한 모든 훈증은 대상 제품 및 포장 내에 배치된 3개의 가스 모니터링 튜브로 모니터링해야 함
- 특히 모니터링 튜브 중 적어도 하나는 훈증제가 도달하기 어려운 위치에 설치해야 하는데, 이는 주로 위탁화물의 중심에 있는 패키지의 중앙에 놓이게 됨
- 절화의 경우 화물 중앙 상자의 가운데에 있는 꽃 뭉치의 플라스틱 슬리브 내에, 다른 제품의 경우에도 중앙 상자의 가운데에 위치
- 상품 내에 가스 모니터링 튜브를 배치하면 기준치의 브롬화물 농도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증가 할 수 있음.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호주 농수산부는 해당 제품 수입업자들은 훈증제 순환 및 침투를 개선하기 위해 위탁화물을 준비하여 적재토록 권장하였음. 예) 뚜껑을 제거하고, 꽃다발을 느슨하게 하는 등

* 출처: 호주 농수산부 <http://www.agriculture.gov.au/import/industry-advice/2017/38-2017>

3. 수입어류 히스타민 분석 샘플링 방식 변경

- 2017 년 8 월 10 일부터 대형 어류 전체에 대한 히스타민 분석을 위한 샘플링은 어류 허리의 전방 하부에서 이루어짐
- 화학 분석은 물고기 살에서 히스타민 독소의 존재를 탐지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나 히스타민은 일반적으로 물고기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물고기의 전방부분이 생선의 히스타민 함량에 대한 최상의 정보를 제공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
- 어류의 히스타민은 소비자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어 수입자는 수입하는 생선 및 어류 제품이 호주 뉴질랜드 식품 기준 코드의 히스타민 200mg / kg 한도를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함

* 출처 : 호주 농수산부 <http://www.agriculture.gov.au/import/goods/food/notices/ifn-14-17>

□ 알레르기 성분 표기

- 알레르기 항원 표시는 음식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들의 삶과 죽음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음. 호주 뉴질랜드 식품 기준 코드는 식품 라벨에 부착해야 하는 알레르기 항원을 규정하고 있음
-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품 물질은 땅콩, 나무 견과류, 우유, 계란, 참깨, 어패류, 콩과 밀, 루핀 등임. 이러한 성분은 식품 첨가물 또는 가공 보조제로 존재할 때마다 식품 라벨에 표시해야 함
- 식품수입업자는 식품을 수입할 경우 알레르기 표시 조건을 이해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음. 이를 위해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이 필수 알레르기 표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하고, 해외 공급 업체에 연락하여 알레르기 항원 존재 여부에 대한 정보 및 보증을 요청할 수 있음
- 수입업자는 건강 사고 및 부적합을 피하기 위해 알레르기 공급 파트너를 교육해야 하며, 제품 분석을 통해 해외 공급자가 제공한 보증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
- 수입업자는 신고 되지 않은 알레르기 항원의 존재가 식품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들에게 인체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함. 1992 년 수입 식품 관리법 (Act)의 제 8 조에 의거하여, 인체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호주로 식품을 수입하는 것은 위법이며, 동 범죄는 10 년 동안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음

* 출처 : 호주 농수산부 <http://www.agriculture.gov.au/import/goods/food/notices/ifn-08-17>

III

통관문제사례

☐ 한국 수입식품 통관 불허 제품 (2017년1월~5월)

○ 화학검사 불합격

일시	제품	원산지	생산자	검출품목	결과	단위	관련규정
30/05/2017	건조 다시마	한국	샘표식품	Iodine	3100	mg/kg	BSW 12/2016
14/03/2017	건조 홍합	한국	Hee Chang Trading Co Ltd	Listeria monocytogenes	검출	/125g	MOL 05/2014
31/05/2017	냉동 삶은 부추 Frozen boiled Korean leek	한국	Chg People	Carbendazim Iprodione Procymidone	0.085 0.94 0.9	mg/kg	FSC 1.4.2
22/02/2017	종가집 단무지 Cut Danmuji (Chongga cut pickled radish)	한국	대상	Vitamin C	동제 품은 비타민C가 허용되지 않음.		FSC 1.3.2

<첨부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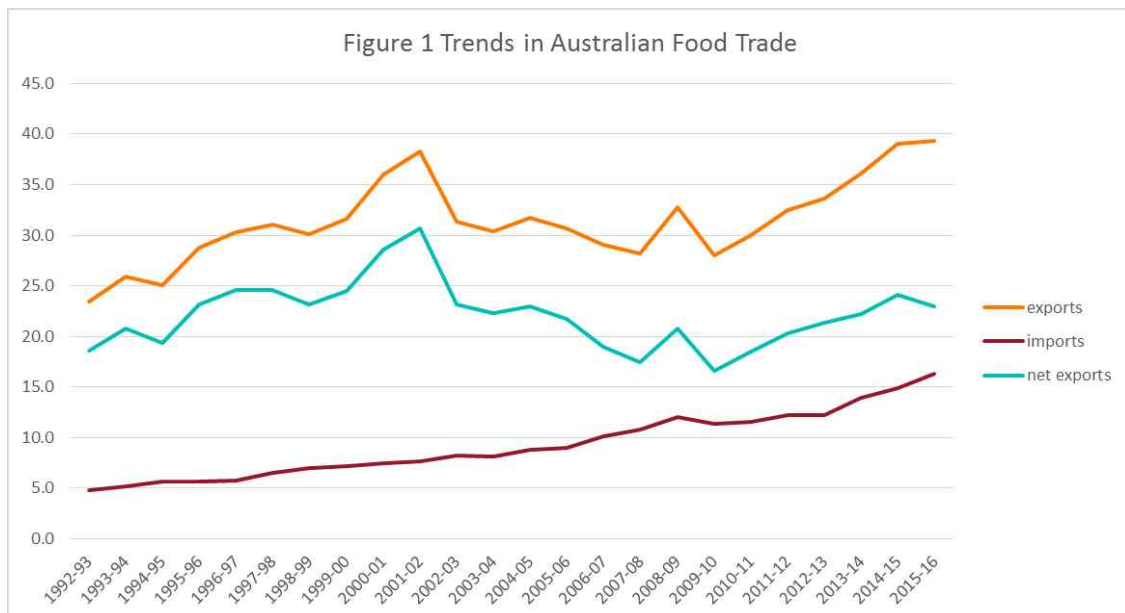
□ 수입 식품 검사 데이터 (2016년 7월 ~ 12월)

- 호주에 수입되는 식품은 1992년 제정된 수입식품 관리법에 기반하여 위험 기반 국경 검사 프로그램인 수입식품 검사제도(IFIS)에 따라 검사 및 관리를 받음
- 호주 농수산부는 2006년 7월 이후 6개월 마다 수입식품검사의 요약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, 아래는 201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IFIS에서 실시한 검사보고서를 요약한 것임

1) 식품 수출입 통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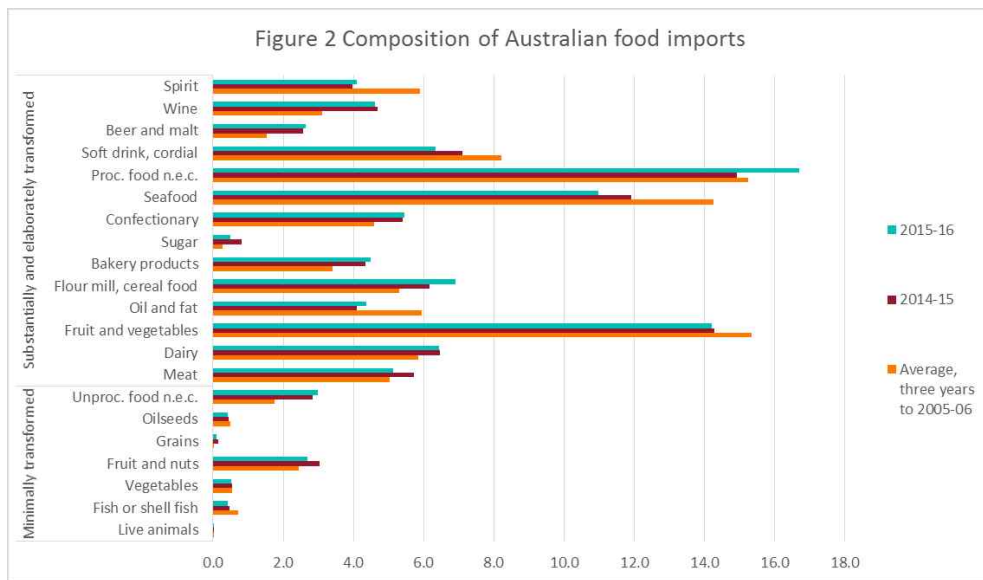
- 호주 식품 수출액은 2015-16년에 전년 동기대비 2.1% 증가한 393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, 이는 역대 최고 기록임
- 호주 식품 수입액은 2015-16 년에 163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1 % 증가함. 호주의 식품 수출액과 식량 수입액의 차이는 2015-16 년에서 4.6 % 감소한 230 억 달러를 기록했음

표1) 호주 식품 수출입 통계



- 호주 식품 수입 증가의 주된 원인은 시리얼, 과일 및 채소, 지방 및 유제품 (그림 2)이었고 육류, 설탕 및 청량음료의 수입은 감소하였음

그림2) 호주 식품류 수입현황



2) 호주 식품 수입국가

- 뉴질랜드는 호주가 식품을 수입하는 주요 국가로 2015-16년에 뉴질랜드로부터 수입된 총 금액은 27.3억 달러였음. 다른 주요 수입 국가는 미국 (10.2%), 중국(7.4%), 태국(6.1%) 등이었음. 호주 식품 수입은 지난 10 년간 꾸준히 증가하였음(그림 3).

그림 3) 호주 식품수입 국가별 비중



3) 호주 수입식품 검역 통계

-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호주 농수산부에서 실시한 식품검역 통계는 다음과 같음
 - 검사 또는 분석을 위해 10,024 개 항목의 수입식품이 선정됨
 - 수입 식품 중 총 16,799 라인이 검사되었으며, 이중 위험 식품군에 포함된 식품은 29.8%, 감시대상 식품은 67.8% 였음. 나머지 2.5%는 수입 보류대상에 포함된 식품류였음
 - 식품 검사 대상의 63.2%가 10개국의 식품에 있었으며 중국, 태국 및 이탈리아 식품 대부분이 검사 대상이었음
- 검사대상으로 선정된 식품들에 총 51,119 건의 실험 및 검사가 이루어 졌으며 (라벨 및 시각 검사 포함), 이를 분류하면 아래와 같음
 - 20,428 건의 라벨 및 구성 평가
 - 10,316 건의 화학 분석 테스트
 - 20,375 건의 기타 테스트
- 식품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뉴질랜드산 식품은 대부분이 1992년 수입 식품 관리법의 대상이 아님. 호주와 뉴질랜드는 Trans-Tasman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에 따라 해당 국가의 식품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검사 없이 호주에서 합법적으로 판매 될 수 있음
- 한국의 경우 전체 수입식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작지만, 검사대상에 오른 식품은 전체 7위로 전체 검사대상 식품 중 5.1%를 점유하였음

표1) 식품 검사 현황 (국가별)

원산지	검사대상식품	비율
중국	1,705	10.1%
태국	1,410	8.4%
이탈리아	1,360	8.1%
미국	1,189	7.1%
일본	1,109	6.6%
인도	1,015	6.0%
한국	849	5.1%
프랑스	688	4.1%
말레이시아	667	4.0%
영국	625	3.7%
기타	6,182	36.8%
총계	16,799	100.0%

출처) AIMS database

그래프1) 원산지 국가별 식품 검사 비율

